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구체적 집행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사항을 반영해 ‘치료감호소’의 기관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안 제23조의 10 신설)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과 보호관찰소장에게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안 제23조의11 신설)

- 1)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이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거주지·전화번호·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2)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 전자장치 부착 등(안 제23조의12 및 제23조의13 신설)

- 1)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2)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3)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가 신고한 사항 등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안 제23조의14 신설)

-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즉시 통지해야 함.
- 2)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경찰청장이 법

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의 통지(안 제23조의15 신설)

법원은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바. 불기소처분의 통지(안 제23조의16 신설)

검사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잠정조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사.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안 제23조의17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절차전자화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스토킹범죄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자료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아. 기타 정비 사항(안 제4조 및 제20조, 제29조 등)

- 1) 「치료감호법」 개정 사항(“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해 치료감호소의 장을 “국립법무병원의 장”으로 변경함.
- 2)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잠정조치 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3) 검사, 사법경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치료감호소의 장”을 “국립법무병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 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본문(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신자료(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을 “본문(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를 각각 “단서(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및 제4항 중 “제5항”을 각각 “제5항(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의 장 등의 통보”를 “국립법무병원의 장 등의 통보”로 한다.

제5장의2(제23조의10부터 제23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23조의11(스토킹 행위자의 신고)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이하 “스토킹 행위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전화번호
5. 직업 및 직장소재지
6.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스토킹 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가 이전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 행위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3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2(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10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보호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정거리 미만으로 근접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하 “피해자장치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을 제공받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사항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내용·수법
2. 피해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성명 및 연락처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라 통지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4(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접근이 금지된 장소를 기준으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0조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의 통지) 법원은 법 제31조의6에 따라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7(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스톱킹 행위자 수신 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톱킹범죄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18(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또는 “피부착자”는 “스토킹 행위자”로 본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성생활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톱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성생활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는 제외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

제29조제7항 중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제29조제8항 중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 ① (생 략)	제4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 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u>치료감호소의 장</u> (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 ----- <u>국립법무병원</u> 의 <u>장</u> ----- ----- ----- -----.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 ----- ----- 법 제16조제2항제1호 · 제3호 · 제4호 및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 제3호 ·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 또는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가 -----.
제14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는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허가하	제14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 본문(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신자료(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

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4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자료는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으로 한다.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

료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

② -----
-- 본문(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
----- 단서(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서(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

자료의 보존·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 신청 및 청구 현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을 3년간 소속 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5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 자료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소의 장 등의 통보)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자료의 보존·폐기 등) ① -----

---- 제5항(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5항(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국립법무병원의 장 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신 설>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23조의11(스토킹 행위자의 신고)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결정을 받은 스톱킹 행위자(이하 “스토킹 행위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전화번호
5. 직업 및 직장소재지
6.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스톱킹 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가 이전된

<신 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 행위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3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2(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10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

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보호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정거리 미만으로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하 “피해자장치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을 제공받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하지 못한

<신 설>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내용·수법
2. 피해자 가족 또는 동거인의 성명 및 연락처

<신 설>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법 제31조의6 제3항에 따라 통지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4(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접근이 금지된 장소를 기준으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0조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의 통지) 법원은 법 제31조의6에 따라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

<신 설>

<신 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생 략)

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
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7(스토킹 행위자 수신자
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또
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스토
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
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
법업무 처리기관에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18(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
여는 제7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
자” 또는 “피부착자”는 “스토킹
행위자”로 본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9. (생략)

<신 설>

10. · 11. (생략)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illegible]

-----. 다만, 제9호의2의 사무
의 경우에는 성생활에 관한 정
보와 유전정보는 제외한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
토크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
· 사용 · 폐기에 관한 사무

10. · 11. (현행과 같음)

③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16. (생략)

<신 설>

<신 설>

17. · 18. (생략)

④ ~ ⑥ (생략)

⑦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은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

-----. 다만, 제16호의2 및 제1
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성생
활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는
제외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
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
토키 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
· 사용 · 폐기에 관한 사무

17. · 1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다음 각 호의 -----

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⑧ ----- 다음 각 호의 -

-----.

<u><신 설></u>	1. <u>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 사무</u>
<u><신 설></u>	2. <u>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u>